

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단129202(본소), 2016가단13117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17. 11. 8.

판결 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3. 5.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C가 2008. 6.경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게 되자 C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의 재산 중 ① 2009. 1. 19. 영천시 D 답 1,104㎡와 E 답 922㎡를, ② 2009. 2. 20. 영천시 F아파트 102동 303호를, ③ 2009. 3. 9. 영천시 G 대 459㎡를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였고, ④ 2009.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자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그 후 C의 요구로, 2009. 5.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C에게 다른 재산의 매도대금에서 C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무 변제 금액 약 1,530만 원을 뺀 나머지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C의 딸이자 원고의 누나인 피고는 위와 같이 C가 원고로부터 재산을 회복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C로부터 그 회복 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현금 중 2,500만 원을 증여받았다.

라. C는 2015. 12. 11.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2,500만 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수증재산 중 원고의 유류분인 1/4 해당 재산,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과 625만 원(2,500만 원 × 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를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2,500만 원은 C의 간병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다룬다.

(2) 그러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C로부터 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C의 간병에 사용하였다는 주장 사실은 영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의 투병기간 중인 2009. 1월부터 3월 사이에 임의로 C의 보유 재산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처분한 재산에 대지, 아파트 등 고가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매매계약서 등 처분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망인에게 반환한 일부 내역 외에는 그 사용처도 불명확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구하는 2,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것 외에도 원고가 C의 재산 중 영천시 H 임야 3,382㎡, 영천시 G

소재 주택, 포스코 주식 등을 다른 재산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375만 원(원고가 반환할 2,00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625만 원을 상계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 이후의 지연손해금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정인

별지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